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16일  
의회 운영 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6일, 엄셋별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년 9월 16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엄셋별 의원)

### 가. 개정이유

- 임신·출산하는 근로자와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90일(다태아를 임신·출산하는 경우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여성 구의원이 임신·출산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하여 여성의원의 출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남성 구의원의 배우자 출산 시에도 1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임신중인 여성의원에게는 90일(다태아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도록 규정함(안 제81조제2항 신설)
-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는 1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규정함(안 제81조제3항 신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김하영

나.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금천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의 경우에 출산 전 · 후 휴가 등 최소한의 육아를 위한 절차를 제도화하여 일 · 가정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짐.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적 불비라고 할 수 있겠으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지방의회의원은 임시회와 정례회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을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 국가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모성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여성의원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이미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여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고, 민 · 관 모두 출산휴가기간이 동일함.

[표 1]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휴가기간〉

관계 법령	출산 전·후 총 기간	출산 후 기간	비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3항)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 [표 2]와 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휴가기간은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 동일하게 10일의 휴가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표 2]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휴가기간〉

관계 법령	휴가기간	비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1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2항 관련 별표 1)	10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10일	

○ 본 개정안은 금천구의회가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징적 의미에서 여성위원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휴가기간을

근로자와 같은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며,

- 아울러,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해당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남성의원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10일 이내로 한 개정안에 대하여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